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2. 03.



김포산업진흥원
GimpO Industry Promotion Agency

사업담당자	기업육성팀	조준석	책임연구원	☎ 070-4269-4082
사업부서장	기업육성팀	박노현	팀장	☎ 070-4269-4084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4
5. 신청·접수	5
6. 평가 및 선정	8
7. 협약	10
8. 지원금 지급	11
9. 사업비 조성 및 관리	11
10. 중간보고 및 평가	14
11. 완료보고 및 평가	15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5
13. 정산잔액 처리원칙	16
14.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17
15. 시행일	17
[첨부] 서식 및 평가지표	18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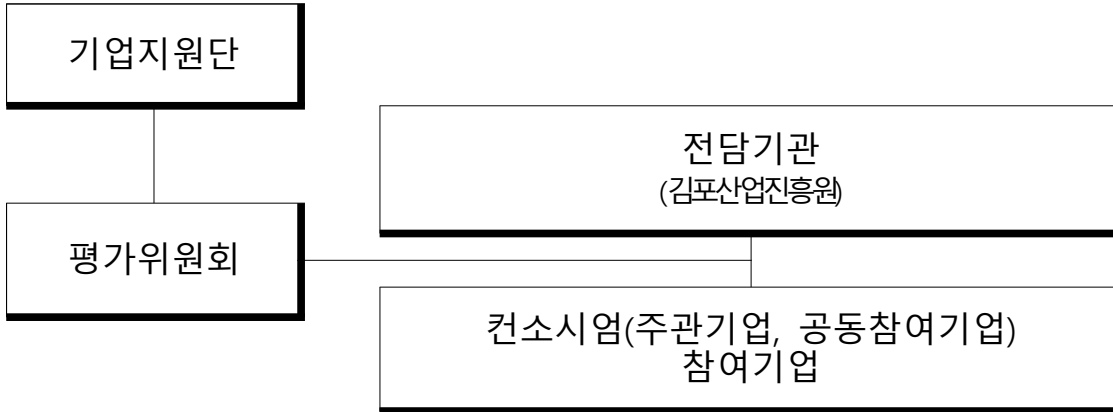
- ‘2022년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2022년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포시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김포산업진흥원을 말함
- “평가위원회”라 함은 대상과제에 대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해 3인 이상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함
- “기업지원단”이라 함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김포산업진흥원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말함
- “참여기업”, “컨소시엄 주관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목표에 따른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공동참여기업”이라 함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컨소시엄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참여기업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기업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함

가. 추진체계도



나. 전담기관

- 김포산업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
 - 사업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사업의 점검,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기업지원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전담기관, 참여기업)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다.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평가를 위하여 기업지원단 Pool을 활용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
- 참여기업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 지원금확정
- 참여기업의 협약변경요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약사항 변경 및 조정심의

<기업지원단의 전문가 Pool 모집분야>

구 분	전문가 유형
경영, 인사, 마케팅 등 비즈니스 분야	·교수 ·유관기관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소지자 ·기타(실무경력자, 기업대표 등)
정책 연구	
생산·공정·품질 및 연구개발	
4차산업	
창업 보육	
특허 및 기술사업화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문가	

※ 김포시 5대 대표산업: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 물류

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과제 관련 기술개발 추진 주도
-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대응자금(현금) 부담 등
- 제(부)품 개선,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 수행
-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전담기관, 참여기업)
- 사업수행 전 과정에 연구개발 참여 및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중간·완료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방법	비고
추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지원대상, 추진절차 등) 등 	진흥원 (내부결재)
공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공고 계획 수립 - 공고문, 신청서 양식 등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진흥원/ 유관기관
서류 접수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 제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서면 검토 실시 	신청기업 →진흥원
평가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를 3~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계획서 확정 	평가위원회
사업지원금 교부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내역 검토 및 조정 ● ①교부신청 요청 및 ②교부결정 통지 	진흥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진흥원 ↔ 참여기업) ● (1차)사업지원금 지급(총 지원금의 70%) 	진흥원 ↔참여기업
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과제 수행(최대 6개월 이내) 	참여기업
착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서 제출 및 착수점검 	진흥원 →참여기업
중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수시점검) 	진흥원 →참여기업
완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점검 ● 현장실사 실시(평가위원 방문) 	진흥원 →참여기업
사업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진흥원 (내부결재)
사업비 정산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2차)사업비 지급(지원금 잔액 30%) 	진흥원 →참여기업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기업 지원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 	진흥원

가. 공고

- 전담기관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시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전담기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를 홍보
- 공고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참여기업의 참여 자격

- 공고일 현재 김포시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전기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
 -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사업전환 계획·추진 또는 사업전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김포시 중소기업 포함

□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다.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관내 전기자동차 가능화 고도화를 위한 진단컨설팅, 기술개발, 기술협업 지원

분야	지원 내용(예시)	
진단컨설팅	· 사업 전환·확대를 위한 기업·기술 진단 지원 -사업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 BM 수립, R&D 로드맵 기획 등 진단 컨설팅	
기술개발	신규	·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여건 마련을 위한 기초 기술개발 지원 -시험분석·인증획득, 설계·해석,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 제·부품 양산을 위한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지원
	고도화	· 기초 기술 고도화를 위한 2차 기술 개발 지원 - '21년도 기술개발 참여 기업 대상으로 고도화 방안 지원
	컨소시엄	· 관내 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 기술 개발 지원 - 관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축

※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진단컨설팅은 총비용 100% 지원, 기술개발은 70% 이내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컨소시엄의 경우, 2개사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기업을 지정해야 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수행기간
진단컨설팅	자동차 산업 변화 대비 기업·기술 진단 컨설팅 지원	최대 500만원	없음	4개월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여건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최대 2,000만원	30%	6개월
기술협업	전기자동차 생산 협력기술 개발지원 ※컨소시엄(관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최대 5,000만원	30%	6개월

라.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담기관 홈페이지(www.gopa.or.kr)에서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이메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 개인·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2]
- 사업계획서 [서식 3]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 요약, 기업 현황, 개발과제 현황,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 기타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 사업신청 서류

-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모든 증빙서류, 공동참여기업은 필수서류만 제출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	
	○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2]	
	○ 사업계획서 [서식 3]	
증빙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구분	제출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시	
	-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증	
	○ 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사업) 수행실적 ※해당시	
	- 수행실적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해당시	
-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연구인력 학위증명서(석·박사)		
○ 연구부서 보유현황 증빙 ※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발급 자료		
○ 우대기업 가산점 증빙 ※해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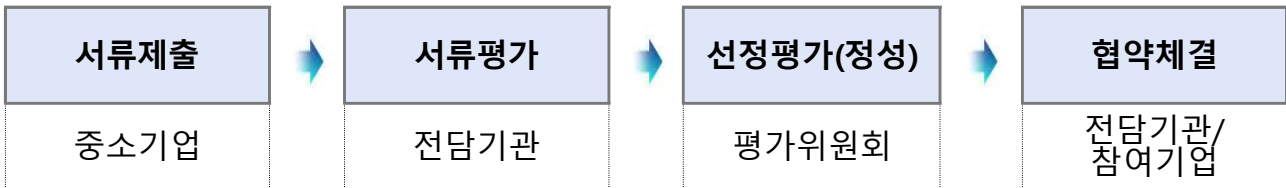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911번지 / industry@gopa.or.kr
- (문의처)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031-981-1329)

6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여부 등 확인 후 심사(선정평가위원회)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나. 서류검토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류평가표[서식 4]와 아래 사항을 확인
 -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타 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참여기업 및 기업 대표의 신용불량 여부, 제재 대상 등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중복성 검토결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
- 1차 서류검토 결과는 30%의 비중으로 반영(정량평가)
- 신청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를 선별적으로 실시

다. 심사 및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지원업종별 전문가로 분야별 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최소 3인 이상 구성
-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원회 운영수당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하되,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평가내용(제5호 서식 참조)
 - 사업의 목적성 및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체계의 적적성 및 명확성
 - 사전준비성
 - 사업성과
- 선정은 평가위원회 점수 및 서면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이상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정성평가점수, 정량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포기기업 발생시 차순위를 선정
- 참여기업은 지원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제 선정결과(사업비, 추진일정 등)가 변동 시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지원과제 선정 이후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차우선 순위 참여기업에게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7

협약

가. 협약체결

- 전담기관과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서식 6]을 체결
-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사업비 지원규모,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등을 포함
-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협약체결 전일까지 사업비관리 전용통장(참여기업명)을 개설
 - 컨소시엄은 주관기업이 공동명의 또는 대표로 전용통장 개설
- 협약서류 중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 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지원금으로 함
- 협약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함
- 전담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 전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컨소시엄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협약 체결 필요

나. 협약의 변경

- 참여기업은 과제의 변경·수정 및 사업비의 변경·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협약변경승인요청서[서식 7]에 의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협약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전문가는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8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과제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 8]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2회 분할로 지급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총액 및 부가세 비용(총사업비 10%)을 전용통장으로 입금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입금여부 확인 후, 사업지원금의 70%을 전용통장으로 지급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지원금의 잔금(30%)을 납입하여 과제를 진행
 - 전담기관은 과제 완료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지원금의 잔금(30%)을 정산하여 참여기업의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령계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컨소시엄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협약 체결 필요

9

사업비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진단컨설팅	100%	100% (최대 500만원)	없음
기술개발	100%	70% (최대 2,000만원)	30%
기술협업	100%	70% (최대 5,00만원)	30%

나.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총 사업비는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등으로 세분하여 계상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사업계획서 [별표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 비목 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
 - 진단컨설팅의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만 인정
- 사업비의 비목별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다.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기술개발

① 시제품 제작비 산정기준

- 제품개선,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제품·시작품의 외주 제작 경비는 실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함. 다만,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 시작품은 외주 제작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시제품, 시작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한해 재료 및 기타비로 계상할 수 있음

②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산정기준

- 제품개선,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단, 연구공간 임대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것은 제외).

-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③ 재료 및 기타비 산정기준

- 제품개선,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는 구입 원가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연구 활동을 위하여 투입, 보유하고 있는 시약 및 재료는 구입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관리 경비는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공인기관 시험 분석료 등의 소요 비용 가능). 다만, 시험분석 및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 사용 경비 등에 계상하여야 함

라.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동 계좌와 연결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집행함
- 타 계좌를 통해 사용된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전용통장에 예치된 지원금과 기업부담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지방재정법(32조의 8, ③)에 따라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액은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로 나누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반납
- 사업비의 지출은 참여기업의 대표(과제책임자)의 책임 하에 협약 및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
 -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중에서 예산 소모를 위한 불

필요한 지출행위 혹은 사업목적과 별개의 영리행위로서 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환수함과 동시에 참여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품의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지급결의서, 영수증(온라인 입금증, 카드매출전표)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 산정 시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한 비목내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단, 변경된 내용은 사업비 사용 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10 중간보고 및 평가

가. 중간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의 1/2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제9호 서식)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서 제출시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출 증빙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나. 중간평가

-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별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중간보고서 내용확인 및 진행사항 등을 평가함
 - * 과제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과제 선정시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
 - *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기간 이외에도 필요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선임된 전문가는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평가하여야 함

- 전문가는 중간평가보고 평가결과를 작성한 후 중간평가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함
 - 60점 이상 :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60점 미만 :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된 과제
- 전담기관은 중간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사업지속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음

11 완료보고 및 평가

가. 완료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완료평가

- 전담기관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완료보고서 내용확인 및 완료사항을 평가함
- 선임된 전문가는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전문가는 완료평가표를 작성한 후 전담기관에게 제출함
- 전담기관은 완료평가결과 사업 미완료 및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참여기업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실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함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 참여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보완, 환수,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실적 1부
- 사업비 집행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내역 사본 1부

13

정산잔액 처리원칙

- 정산잔액은 총사업비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 잔액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결과 부당집행 반환액 그리고 이자액으로 함
 - 단, 발생이자가 십원 미만인 경우 제외하여 산정함
 - ※ 이자액 = 이자 × (총지원금 비율)
- 참여기업 조치사항
 -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반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14

평가위원 및 전문가 수당지급 기준

- 전담기관은 평가, 선정 등 동 동사업과 관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선정수당	1부당 2만원	(10개사 선정기준) - 2만원 x 10부 = 20만원 ※(참고)최대 30만원
현장평가수당	시간당 6만원 ※1개 기업 평가시 2시간 소요	(1개사 평가기준) - 6만원 x 2시간 x 1개사 = 12만원

15

시행일

- 이 운영지침은 사업공고일부터 시행

서식번호	제목
[서식 1]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4]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서류평가표
[서식 5]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서식 6]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협약서
[서식 7]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서식 8]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8-1]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1] 사업신청서(공통) ※컨소시엄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모두 제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기업 현황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종목		업종코드	
	주 생산품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상시종업원수	명	전년도 매출액	천원
사업 담당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부서 / 직책		이메일	
소재지	본사			
	공장			
가점사항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경영기업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우수기업 <input type="checkbox"/> INNO-BIZ 기업 <input type="checkbox"/> MAIN-BIZ 기업	<input type="checkbox"/> 녹색기술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NET 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NEP 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기업 <input type="checkbox"/> 김포시 청년기업 <input type="checkbox"/>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 기업	
연구인력 보유현황	명	기술개발사업 참여건수	건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국제특허	국내특허	실용신안	
	건	건	건	건
(2) 신청과제 현황				
개발과제명				
신청 항목	<input type="checkbox"/> 진단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고도화)	<input type="checkbox"/> 컨소시엄
사업비	총사업비	기업부담금	사업지원금	
<p>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p> <p>2022. . .</p> <p>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p>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 고도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술개발(진단컨설팅)-**

20 .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작성시 작성요령 및 가이드 문구(파란색) 참고 및 제출시 삭제

I	기업 현황
---	--------------

1. 기업소개

1-1. 기업 소개 *작성요령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1-2. 조직 현황 *작성요령 : 조직도 또는 조직별 주요기능 작성

1-3. 인력 현황 *작성요령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명)

인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2. 재무현황 *작성요령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우대기업여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부	지정번호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여부	지정번호		MAIN-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족친화경영 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NEP, NET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여부	확인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여부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시상 여부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여부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요망

II	사업 개요
----	--------------

구분	세부 내용												
지원목표 및 필요성	<p>1. 사업개요 및 목표 <i>*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i></p> <p><input type="checkbox"/> 사업목표 ○ -</p> <p>2. 지원의 필요성 <i>* 지원받고자 컨설팅의 현재 진행상황, 애로사항 중심으로 필요성(중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i></p> <p><input type="checkbox"/> 사업목표 ○ -</p> <p>3. 사업 전환 의지 <i>* 전기자동차 산업 내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혁신 의지를 자유롭게 기술</i></p> <p>○ -</p>												
지원 받고자 하는 내용	<p>4. 지원신청 내용</p> <p>○ 진단 내용 (<i>*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설명</i>) -</p> <p>○ 컨설팅 추진 계획 (<i>*컨설팅 내용 및 범위, 컨설팅 일정 등 사업 추진 내용, 사업기간은 12월 이내로 반드시 종료되어야 함</i>) -</p> <p>○ 소요금액(예상) <i>*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 지급, VAT 및 초과분은 기업부담</i></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40%;">구 분(소요 내용)</th> <th style="width: 15%;">지원금</th> <th style="width: 15%;">기업부담금</th> <th style="width: 30%;">합계(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i>컨설팅 내용</i></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0</td> <td style="text-align: right;">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0</td> <td style="text-align: right;">0</td> </tr> </tbody> </table> <p>○ 달성 목표 (<i>* 진단컨설팅을 통한 달성 목표(전후 비교) 1가지 이상 작성</i>) -</p>	구 분(소요 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원)	<i>컨설팅 내용</i>		0	0	합 계		0	0
구 분(소요 내용)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원)										
<i>컨설팅 내용</i>		0	0										
합 계		0	0										

구분	세부 내용
역량 및 계획	<p>5. 기업 역량 및 자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역량(* 현재 보유한 핵심역량 및 실적 등을 기술) - ○ 자체 계획(*전기차 관련 사업 전환을 위한 계획을 기술) -
전기차 관련 사업 전환 시도 경험	<p>6.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 전환 시도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시도) * 전기차 부품 사업 전환을 시도한 경험, 과정, 한계점 등을 기술 - ○ (해당 시) 과거 컨설팅 경험 등을 기술 -
지원 후 계획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p>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p> <p>* 컨설팅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 고도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술개발(신규)-**

20 .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작성시 작성요령 및 가이드 문구(파란색) 참고 및 제출시 삭제

I	기업 현황
---	--------------

1. 기업소개

1-1. 기업 소개 *작성요령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1-2. 조직 현황 *작성요령 : 조직도 또는 조직별 주요기능 작성

1-3. 인력 현황 *작성요령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명)

인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2. 재무현황 *작성요령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우대기업여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부	지정번호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여부	지정번호		MAIN-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족친화경영 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NEP, NET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여부	확인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여부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시상 여부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여부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요망

4.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 * 1. 최근 5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기재
-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 중” 으로 명시

	과제 현황
--	--------------

【작성개요】
 항목별로 개조식으로 작성(항목 추가는 가능하며 기존 항목은 삭제 불가)

■ 과제명 :

*작성요령 :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과제명 작성

1. 개발의 개요

1-1. 기술개발 개요

구분	기술개발 개요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의 기본개념, 추진배경 등 작성 - 개발하고자 하는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p>○</p> <p>-</p> <p>-</p> <p>○</p> <p>-</p> <p>-</p>

1-2. 기술개발 필요성

구분	필요성 및 목표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개요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필요성 작성 <p>○</p> <p>-</p> <p>-</p> <p>○</p> <p>-</p> <p>-</p>

1-3. 기술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

구분	독창성 및 차별성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p>- 개발대상 기술(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제품) 및 국내 기술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p> <p>○</p> <p>-</p> <p>-</p> <p>○</p> <p>-</p> <p>-</p>

1-4. 전기차 사업 전환(확대)을 위한 보유역량 및 의지

구분	전기차 사업 전환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p>- 전기차 관련 사업 전환 혹은 확대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 주요기술, 관련 경험, 기업혁신 의지 등을 자유롭게 작성</p> <p>○</p> <p>-</p> <p>-</p> <p>○</p> <p>-</p> <p>-</p>

2. 개발의 목표

2-1. 기술개발 목표

구분	기술개발 목표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완료 후 예상되는 목표를 개발결과물(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 (적용분야, 적용기술, 주요성능 등) - 개발결과물 명확히 제시 必 <p>○ - - ○ - -</p>

2-2. 기술개발 목표 지표

**작성요령*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 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순번	항목	지표명	현재 지표 (해당시)	목표치
1	기술개발			
2	시제품 제작			
3				
4				
5				

3. 개발방법

3-1. 기술개발 방법

구분	기술개발 방법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방법 위주로 작성</p> <p>○ - -</p> <p>○ - -</p>

3-2. 추진체계

**작성요령 : 참여기업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3-3. 추진일정

*작성요령 : 사업 수행기간 6개월 이내로 작성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예시) 계획 수립	■											
. 예시) 자료수집		■	■									
. 예시) 설계도면 작성			■	■								
. 예시) 시제품 제작				■	■	■	■	■	■	■		
. 예시) 보고서 작성									■	■		
과제 완료 예정일	2022년 00월 00일											

4. 기술개발 예상 성과

기술개발 이전 현황(기존기술 또는 제품(부품)) *해당시 작성(미해당시 생략)	
사진	(개발 이전 현황) - - (주요 애로사항) - -



기술개발 추진 예상 성과 *작성 필수	
사진	(개발결과 세부 내용) - - (주요성과) -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정량적	구분	지원 전	지원 후(예상)	비 고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 신장)
		신 규 채 용	-	명	(% 신장)
		수 출 액	-	천원	(% 신장)
		신규계약금액	-	천원	(% 신장)
기대 효과	정성적	<p><i>*작성요령</i></p> <p>- 본 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신규시장 발굴, 해당 아이টে에 대한 계약 및 신규 거래처 발굴, 제품개선, 매출상승 등의 사업화 관점에서의 예상성과)</p>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p><i>*작성요령</i></p> <p>- 지원을 통한 사업화 추진 및 수요연계(고객사, 거래처) 내용을 작성</p> <p>-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p>			

III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부가세 제외)

* 사업신청서 제출시 예상 비용으로 작성하며, 완료시점 확정사업비 및 지출증빙 제출예정

(단위 : 원)

총사업비(A)	진흥원 지원금(B)	기업부담금	비고(B/A)
예시)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66.7 %

* 총사업비의 최대 70% 한도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기업부담금으로 산정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공급가액 기준))

2. 비목별 사업비(부가세 제외)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시제품 제작비	○						
	○						
	○						
	○						
	소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별표 1]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전기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시제품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에 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 및 기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 공인시험성적서 발급비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 고도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술개발(고도화)-**

20 .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작성시 작성요령 및 가이드 문구(파란색) 참고 및 제출시 삭제

I	기업 현황
---	--------------

1. 기업소개

1-1. 기업 소개 *작성요령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1-2. 조직 현황 *작성요령 : 조직도 또는 조직별 주요기능 작성

1-3. 인력 현황 *작성요령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명)

인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2. 재무현황 *작성요령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우대기업여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부	지정번호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여부	지정번호		MAIN-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족친화경영 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NEP, NET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여부	확인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여부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시상 여부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여부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요망

4.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 * 1. 최근 5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기재
-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 중” 으로 명시

	과제 현황
--	--------------

【작성개요】
 항목별로 개조식으로 작성(항목 추가는 가능하며 기존 항목은 삭제 불가)

■ 과제명 :

*작성요령 :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과제명 작성

1. 개발(고도화)의 개요

1-1. 1단계(가능화) 기술개발 결과

구분	1단계(가능화) 기술개발 결과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1단계(가능화) 기술개발 결과 및 2단계(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p>○</p> <p>-</p> <p>-</p> <p>○</p> <p>-</p> <p>-</p>

1-2.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 개요

구분	기술개발 개요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와 연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의 기본개념, 추진배경 등 작성 - 개발하고자 하는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p>○</p> <p>-</p> <p>-</p> <p>○</p> <p>-</p> <p>-</p>

1-3.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 필요성

구분	필요성 및 목표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 - 기술개발 개요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필요성 작성</p> <p>○ - -</p> <p>○ - -</p>

1-4.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의 독창성 및 차별성

구분	독창성 및 차별성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 - 개발대상 기술(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제품) 및 국내 기술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p> <p>○ - -</p> <p>○ - -</p>

1-4. 전기차 사업 전환(확대)을 위한 보유역량 및 의지

구분	전기차 사업 전환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p>- 전기차 관련 사업 전환 혹은 확대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 주요기술, 관련 경험, 기업혁신 의지 등을 자유롭게 작성</p> <p>○ - -</p> <p>○ - -</p>

2. 개발의 목표

2-1.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 목표

구분	기술개발 목표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완료 후 예상되는 목표를 개발결과물(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 (적용분야, 적용기술, 주요성능 등) - 개발결과물 명확히 제시 必 <p>○ - -</p> <p>○ - -</p>

2-2.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 목표 지표

**작성요령*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 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순번	항목	지표명	현재 지표 (해당시)	목표치
1	<i>기술개발</i>			
2	<i>시제품 제작</i>			
3				
4				
5				

3. 개발방법

3-1.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방법

구분	기술개발 방법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방법 위주로 작성</p> <p>○ - -</p> <p>○ - -</p>

3-2. 추진체계

**작성요령 : 참여기업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3-3. 추진일정

*작성요령 : 사업 수행기간 6개월 이내로 작성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예시) 계획 수립	■											
. 예시) 자료수집		■	■									
. 예시) 설계도면 작성			■	■								
. 예시) 시제품 제작				■	■	■	■	■	■	■		
. 예시) 보고서 작성									■	■		
과제 완료 예정일	2022년 00월 00일											

4. 기술개발 예상 성과

1단계 기술개발(가능화) 추진 성과	
사진	(개발결과 세부 내용) - - (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 -



2단계 기술개발(고도화) 추진 예상 성과	
사진	(개발결과 세부 내용) - - (주요성과) -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정량적	구분	지원 전	지원 후(예상)	비 고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 신장)
		신 규 채 용	-	명	(% 신장)
		수 출 액	-	천원	(% 신장)
		신규계약금액	-	천원	(% 신장)
기대 효과	정성적	<p><i>*작성요령</i></p> <p>- 본 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신규시장 발굴, 해당 아이টে에 대한 계약 및 신규 거래처 발굴, 제품개선, 매출상승 등의 사업화 관점에서의 예상성과)</p>			
		<p><i>*작성요령</i></p> <p>- 지원을 통한 사업화 추진 및 수요연계(고객사, 거래처) 내용을 작성</p> <p>-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p>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p><i>*작성요령</i></p> <p>- 지원을 통한 사업화 추진 및 수요연계(고객사, 거래처) 내용을 작성</p> <p>-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p>			

III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부가세 제외)

* 사업신청서 제출시 예상 비용으로 작성하며, 완료시점 확정사업비 및 지출증빙 제출예정

(단위 : 원)

총사업비(A)	진흥원 지원금(B)	기업부담금	비고(B/A)
예시)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66.7 %

* 총사업비의 최대 70% 한도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기업부담금으로 산정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공급가액 기준))

2. 비목별 사업비(부가세 제외)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시제품 제작비	○						
	○						
	○						
	○						
	소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별표 1]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전기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시제품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에 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 및 기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공인시험성적서 발급비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 고도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술개발(컨소시엄)-**

20 . .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과제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작성시 작성요령 및 가이드 문구(파란색) 참고 및 제출시 삭제

I | **기업 현황**

① 주관기업 : *기업명

1. 기업소개

1-1. 기업 소개 *작성요령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1-2. 조직 현황 *작성요령 : 조직도 또는 조직별 주요기능 작성

1-3. 인력 현황 *작성요령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2. 재무현황 *작성요령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단위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3. 우대기업여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부	지정번호		INNO-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일자리 우수기업여부	지정번호		MAIN-BIZ 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가족친화경영 기업 여부	지정번호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벤처기업 여부	확인번호		NEP, NET 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회적기업 여부	확인번호		장애인기업 여부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여부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시상 여부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여부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제출 요망

4.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 * 1. 최근 5년 이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기재
-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 비고란에는 “성공”, “실패”, “진행 중” 으로 명시

②-1 공동참여기업 : *기업명

1. 기업소개

1-1. 기업 소개 *작성요령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1-2. 조직 현황 *작성요령 : 조직도 또는 조직별 주요기능 작성

1-3. 인력 현황 *작성요령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②-2 공동참여기업 : *기업명

1. 기업소개

1-1. 기업 소개 *작성요령 : 연혁, 주요사업, 강점(생산품, 기술, 시설) 등의 간략한 기업 소개 자유롭게 작성

1-2. 조직 현황 *작성요령 : 조직도 또는 조직별 주요기능 작성

1-3. 인력 현황 *작성요령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연구전담	연구보조	연구관리		

	과제 현황
--	--------------

【작성개요】
 항목별로 개조식으로 작성(항목 추가는 가능하며 기존 항목은 삭제 불가)

■ 과제명 :

*작성요령 :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과제명 작성

1. 개발의 개요

1-1. 컨소시엄 기술개발 개요

구분	기술개발 개요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의 기본개념, 추진배경 등 작성 - 개발하고자 하는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p>○ - -</p> <p>○ - -</p>

1-2. 컨소시엄 기술개발 필요성

구분	필요성 및 목표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개요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필요성 작성 - 단독 기술개발이 아닌 협력과제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 작성 <p>○ - -</p> <p>○ - -</p>

1-3. 기술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

구분	독창성 및 차별성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p>- 개발대상 기술(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제품) 및 국내 기술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p> <p>○ - -</p> <p>○ - -</p>

1-4. 컨소시엄 운영 및 확대를 위한 보유역량 및 의지

구분	전기차 사업 전환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p>- 전기차 관련 컨소시엄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 주요기술, 관련 경험, 기업혁신 의지 등을 자유롭게 작성</p> <p>○ - -</p> <p>○ - -</p>

2. 개발의 목표

2-1. 기술개발 목표

구분	기술개발 목표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완료 후 예상되는 목표를 개발결과물(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작성 (적용분야, 적용기술, 주요성능 등) - 개발결과물 명확히 제시 必 <p>○ - - ○ - -</p>

2-2. 기술개발 목표 지표

**작성요령*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 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순번	항목	지표명	현재 지표 (해당시)	목표치
1	기술개발			
2	시제품 제작			
3				
4				
5				

3. 개발방법

3-1. 컨소시엄 기술개발 방법

구분	기술개발 방법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방법 위주로 작성</p> <p>○ - - ○ - -</p>

3-2. 컨소시엄 기술개발 추진전략

구분	기술개발 방법
주요 내용	<p><i>*작성요령</i> -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운영방안 및 추진전략을 작성</p> <p>○ - -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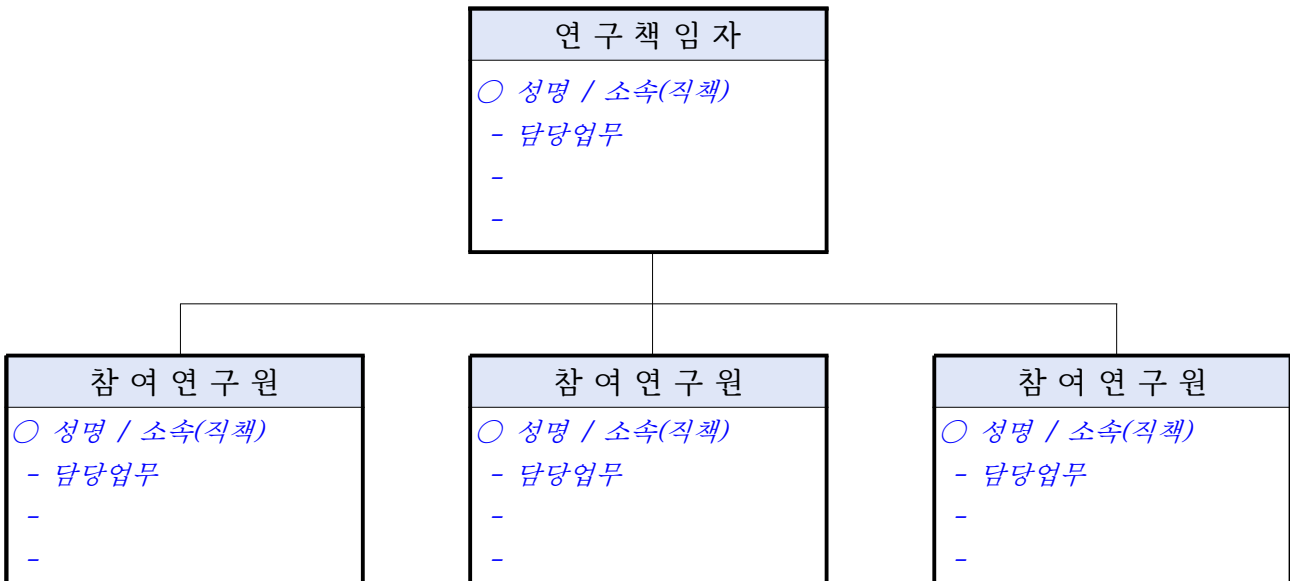
3-3. 권소사업 추진체계

*작성요령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순번	구분	기업명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비중(%)
1	주관기업		○ - -	
2	참여기업1		○ - -	
3	참여기업2		○ - -	
총계				100%

<권소사업 체제도>



3-3. 추진일정

*작성요령 : 사업 수행기간 6개월 이내로 작성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예시) 계획 수립	■											
. 예시) 자료수집		■	■									
. 예시) 설계도면 작성			■	■								
. 예시) 시제품 제작				■	■	■	■	■	■	■		
. 예시) 보고서 작성									■	■		
과제 완료 예정일	2022년 00월 00일											

4. 기술개발 예상 성과

4-1 주관기업

기술개발 이전 현황(기존기술 또는 제품(부품)) *해당시 작성(미해당시 생략)	
사진	(개발 이전 현황) - - (주요 애로사항) - -



기술개발 추진 예상 성과 *작성 필수	
사진	(개발결과 세부 내용) - - (주요성과) - -

4-2 공동참여기업

기술개발 이전 현황(기존기술 또는 제품(부품)) *해당시 작성(미해당시 생략)	
사진	(개발 이전 현황) - - (주요 애로사항) - -



기술개발 추진 예상 성과 *작성 필수	
사진	(개발결과 세부 내용) - - (주요성과) -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정량적	구분	지원 전	지원 후(예상)	비 고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 신장)
		신 규 채 용	-	명	(% 신장)
		수 출 액	-	천원	(% 신장)
		신규계약금액	-	천원	(% 신장)
기대 효과	정성적	<p><i>*작성요령</i></p> <p>- 본 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신규시장 발굴, 해당 아이টে에 대한 계약 및 신규 거래처 발굴, 제품개선, 매출상승 등의 사업화 관점에서의 예상성과)</p>			
		<p><i>*작성요령</i></p> <p>- 지원을 통한 사업화 추진 및 수요연계(고객사, 거래처) 내용을 작성</p> <p>-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마케팅 전략, 상용화 계획, 신규시장 확보 등)</p> <p>※ 주관기업과 공동참여기업 나눠서 향후 활용방안 및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작성</p> <p>1. 참여기업</p> <p>2. 공동참여기업</p>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III 사업비 산정내역

1. 사업비 조성(부가세 제외)

* 사업신청서 제출시 예상 비용으로 작성하며, 완료시점 확정사업비 및 지출증빙 제출예정

(단위 : 원)

총사업비(A)	진흥원 지원금(B)	기업부담금	비고(B/A)
예시) 8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62.5 %

* 총사업비의 최대 70% 한도로 지원금이 산정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기업부담금으로 산정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공급가액 기준))

2. 비목별 사업비(부가세 제외)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소요내역			비율 (%)	비고
			단가	수량	계		
시제품 제작비	○						
	○						
	○						
	○						
	소 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						
	○						
	소 계						
재료 및 기타비	○						
	○						
	○						
	○						
	소 계						
총 사업비							

[별표 1]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시제품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에 사용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 및 기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공인시험성적서 발급비

[서식4] 사업 서류평가표(공통)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서류평가표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기업현황 심사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참여기업의 매출규모(20점)	20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상		
	16	- 전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12	-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		
	8	- 전년도 매출액 5억 이상		
	4	- 전년도 매출액 5억 미만		
상시 종업원수(20점)	20	- 15명 이상		
	16	- 10명 이상		
	12	- 7명 이상		
	8	- 5명 이상		
	4	- 3명 이하		
김포시 산업 기여도(15점)	15	- 관내 사업활동 기간 10년 이상		
	12	- 관내 사업활동 기간 5년 이상 및 10년 미만		
	9	- 관내 사업활동 기간 3년 이상 및 5년 미만		
	6	-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이상 및 3년 미만		
	3	- 관내 사업활동 기간 1년 미만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보유현황(15점)	15	- 41점 이상 : 15점 / 31~40점 : 12점 / 21~30점 : 9점, 11~20점 : 6점 / 10점 이하 : 3점 / 없음 : 0점		
	12	※아래 항목에 따라 합계 점수 산출		
	9			
	6	· 국제특허 등록 1건당 20점, 출원 10점		
	3	· 국내특허 등록 1건당 10점, 출원 5점		
0	· 실용신안 등록 1건당 5점, 출원 3점			
최근 5년간 정부R&D사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여(10점)	10	- 2건 이상		
	5	- 1건		
	0	- 없음		
참여기업의 연구인력 보유(10점)	10	- 상시근로자 석·박사 인력 3명 이상		
	5	- 상시근로자 석·박사 인력 2명 이하		
	0	-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보유(10점)	10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0	- 없음		
가점 (최대10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2	- 경기도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일자리우수기업	2	- 경기도 일자리우수 인증제도에 의한 기업	
	INNO(main)-BIZ기업	2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기업	
	NET, NEP 인증기업	2	- 신기술 혹은 신기술제품으로 인정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2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벤처기업	2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여성기업	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2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기업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	2	-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 기업	
합 계(100점)				

[서식5] 사업 선정평가표(진단컨설팅)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계
		15	8	6	4	2	
지원 필요성 (40)	○ 사업 동기 명확성 및 진단 컨설팅 필요성은 적정한가?	15	8	6	4	2	
	○ 진단컨설팅의 목표와 기업 경영 전략 목표가 적정한가?	15	8	6	4	2	
	○ 전기자동차(부품) 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가?	10	8	6	4	2	
적정성 (20)	○ 신청기업(컨설팅기관)의 추진체계 및 진행계획은 적정한가?	10	8	6	4	2	
	○ 과제범위 대비 사업예산 산정은 적정한가?	10	8	6	4	2	
기대 효과 (40)	○ 기업의 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단 컨설팅 추진 계획을 과부족 없이 설정하고 있는가?	15	8	6	4	2	
	○ 진단컨설팅 내용에 따른 구체적 성과계획이 있는가?	15	8	6	4	2	
	○ 본 사업(진단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연구개발, 사업화, 수요처 확대 가능성 등)	10	8	6	4	2	
총합 (100)							

평가의견

[서식5] 사업 선정평가표(기술개발-신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사업 목적성 및 적정성 (20)	○ 사업 동기가 명확하고, 사업목표와 기업의 개선목표가 부합한가?	10	8	6	4	2	
	○ 주요 기술적 성능지표에 대하여 개발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8	6	4	2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은 타당성·독창성이 있는가?	10	8	6	4	2	
	○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과부족 없이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5	4	3	2	1	
	○ 개발사업비는 타당한가?	5	4	3	2	1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2	
	○ 수행주체는 담당하는 개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10	8	6	4	2	
사전 준비성 (20)	○ 수행주체는 담당하는 개발 내용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8	6	4	2	
	○ 수행주체는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인력, 연구 기자재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8	6	4	2	
사업 성과 (20)	○ 개발 완료 이후 기존제품 및 공정에 도입·활용 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 개발 내용은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인가?	5	4	3	2	1	
	○ 시장확대, 시장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산업경제 발전에 영향은?	5	4	3	2	1	
총합 (100)							

평가의견

[서식5] 사업 선정평가표(기술개발-고도화)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가일 : 2022 . . .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사업 목적성 및 적정성 (20)	○ 사업 동기가 명확하고, 사업목표와 기업의 개선목표가 부합한가?	10	8	6	4	2	
	○ 이전 기술개발 내용과 관련하여 지속성 및 고도화 가능성이 있는가?	5	4	3	2	1	
	○ 주요 기술적 성능지표에 대하여 개발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5	4	3	2	1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은 타당성·독창성이 있는가?	10	8	6	4	2	
	○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과부족 없이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5	4	3	2	1	
	○ 개발사업비는 타당한가?	5	4	3	2	1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2	
	○ 수행주체는 담당하는 개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10	8	6	4	2	
사전 준비성 (20)	○ 수행주체는 담당하준받는 개발 내용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8	6	4	2	
	○ 수행주체는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인력, 연구 기자재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8	6	4	2	
사업 성과 (20)	○ 개발 완료 이후 기존제품 및 공정에 도입·활용 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 개발 내용은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인가?	5	4	3	2	1	
	○ 시장확대, 시장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산업경제 발전에 영향은?	5	4	3	2	1	
총합 (100)							

평가의견

[서식5] 사업 선정평가표(기술개발-컨소시엄)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평가일 : 2022

참여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본사:	검토자	(서명)
	사업장(공장):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계
사업 목적성 및 적정성 (20)	○ 사업 동기가 명확하고, 사업목표와 기업의 개선목표가 부합한가?	10	8	6	4	2	
	○ 주요 기술적 성능지표에 대하여 개발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8	6	4	2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은 타당성·독창성이 있는가?	10	8	6	4	2	
	○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과부족 없이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5	4	3	2	1	
	○ 개발사업비 및 공동개발연구 사유는 타당한가?	5	4	3	2	1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컨소시엄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2	
	○ 컨소시엄은 수행주체별 담당하는 개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10	8	6	4	2	
사전 준비성 (20)	○ 수행주체는 담당하는 개발 내용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8	6	4	2	
	○ 수행주체는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인력, 연구 기자재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10	8	6	4	2	
사업 성과 (20)	○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10	8	6	4	2	
	○ 개발 내용은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인가?	5	4	3	2	1	
	○ 시장확대, 시장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산업경제 발전에 영향은?	5	4	3	2	1	
총합 (100)							

평가의견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협약서

(재)김포산업진흥원 참여기업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사업명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협약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협약금액	총사업비		진흥원지원금		기업부담금	
	원		원		원	
협약자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원 장 이하 관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재)김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이하 “사업”) 수행에 관하여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2 조【협약의 범위】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약한다.

①(협약 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간 사업 수행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이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 수행)

1.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원금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의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지급)

1. 사업비는 진흥원이 총 소요비용의 70%이내(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30% 이상을 부담한다.
2.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총액 및 부가세 비용(총사업비 10%)을 입금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여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지원금)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사업비관리통장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경영여건, 개발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사업비의 관리·사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진흥원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계좌를 통해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체크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참여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협약기간 1/2 시점 이후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협약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후,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중간·완료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중간·완료평가를 거부할 경우, 협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과제는 “실패”로 간주한다.

⑥(관련자료 제출)

1. 참여기업은 진흥원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진흥원이 주관하는 추정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자료제공 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협약 변경)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⑧(협약 해지) 진흥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경우
2. 사업기간 중 참여기업의 타 시로 이전
3.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⑨(환수) 협약이 해약(중단, 실패과제 포함)된 경우, 진흥원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급(협약지원금)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한다.

⑩(기밀유지) 진흥원과 참여기관의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참여기업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⑪(관계규정의 준수)

1.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재하고 사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⑫(결과물 및 성과의 활용 등)

1.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지원사업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성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동화·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⑬(기타) 그 외 사업의 수행 절차는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3 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과 참여기업에 의하여 정한다.

제 4 조【협약의 효력】

협약서는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22년 00월 00일

전담기관: (재)김포산업진흥원 원 장 이 하 관 (인)

참여기업: 대표자 (인)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참여기업명			과제책임자	
			연 락 처	
과 제 명				
협약기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본인은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협약서상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사업지원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참여기업		대표자	
연락처		과제책임자	
소재지	(본사)		(공장)

2. 신청 내용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사업지원금 지급요청 금액	천원		

3. 참여기업 사업비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1. 최종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입금계좌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서식)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지원금을 상기와 같이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지원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금번 김포산업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지원금 청렴이행 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지원금 신청 시 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 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지원금 집행정산 시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견적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징구하는 행위 등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지원금 집행이후에는 지원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지원금의 신청과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겠습니다.
5. 당사는 위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지원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귀하